#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59

발의연월일: 2025. 3. 26.

발 의 자:이연희·허종식·서미화

이해식 • 한준호 • 김정호

문진석 • 박홍배 • 박상혁

안태준 · 김윤덕 · 정준호

이광희 • 이춘석 • 이정문

박수현 의원(16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 한하여 관리규약, 임차료 증감 등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관련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대표회의의 선거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대표회의 구성 관련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표회의를 원활하게 구성하는데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한편, 임차인대표회의의 경우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 입주자대 표회의와 달리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회의 운영 관련 교육 및 윤리교 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 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선거관리위원회 등 임차인대표회의의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,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입주민대표회의와 동일하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를 원활하게 구성함과 아울러 관련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,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·제5항·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"를 "그 밖에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"로 한다.

-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 한 대표자(이하 "동별 대표자"라 한다)로 구성한다.
- ⑤ 임차인대표회의에는 임원으로 회장, 부회장 및 감사를 둔다. 이경우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⑦ 임차인은 동별 대표자 및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선거를 공정하 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"선거관리위원회"라 한다) 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수 있다.

제56조제1항제3호 중 "제52조제4항"을 "제52조제6항"으로 한다. 제67조제3항제7호 중 "제52조제4항"을 "제52조제6항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52조(임차인대표회의) ① ~ ③	제52조(임차인대표회의) ① ~ ③	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	
<u> &lt;신 설&gt;</u>	④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			
	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			
	여 선출한 대표자(이하 "동별			
	대표자"라 한다)로 구성한다.			
<u> &lt;신 설&gt;</u>	⑤ 임차인대표회의에는 임원으			
	로 회장, 부회장 및 감사를 둔			
	다. 이 경우 임원은 동별 대표			
	자 중에서 선출한다.			
<u>④</u> (생 략)	<u>⑥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			
<u>&lt;신 설&gt;</u>	⑦ 임차인은 동별 대표자 및			
	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선거를			
	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			
	거관리위원회(이하 "선거관리			
	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			
	<u>할 수 있다.</u>			
<u>&lt;신 설&gt;</u>	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항에			
	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「선			
	거관리위원회법」 제2조제1항			
	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			
	관할하는 구・시・군선거관리			
	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			

<u>5</u>	제1형	}의 °	김차인	대표회의	]의
구성	및	운영	등에	필요한	시
항은	대통	통령령	으로 🤇	정한다.	

제56조(분쟁의 조정신청) ① 임대 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 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3. <u>제52조제4항</u> 각 호의 사항
- 4. (생략)
- ②・③ (생략)

제67조(과태료) ① · ② (생 략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6. (생 략)
- 7. <u>제52조제4항</u>을 위반하여 임 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 정·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 한 임대사업자
- 8. (생략)
- ④ ~ ⑥ (생 략)

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				
⑨ 그 밖에 제1항 및 제7항에				
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선거				
관리위원회				
제56조(분쟁의 조정신청) ①				
1. • 2. (현행과 같음)				
3. <u>제52조제6항</u>				
4. (현행과 같음)				
②・③ (현행과 같음)				
제67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				
같음)				
③				
1. ~ 6. (현행과 같음)				
7. <u>제52조제6항</u>				
8. (현행과 같음)				
④ ~ ⑥ (현행과 같음)				